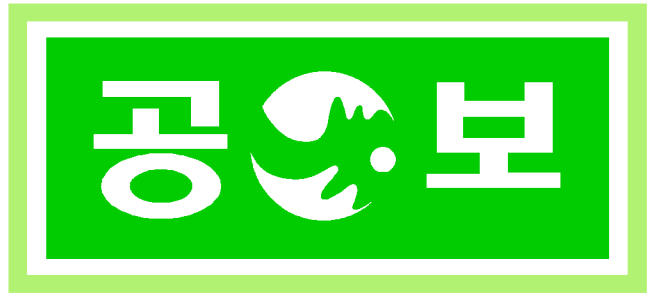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105 호 2018. 2. 1.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4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1호[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69호[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72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73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78호[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설치 행정예고] 20

안 내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 - 14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 점용 목적 및 개요

인공구조물 설치(인공잔디 및 헬스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명촌동 774-3번지

나. 면적 : 65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8. 1. 31. ~ 2022. 5.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2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0길 8(진장동) 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2. 1.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0B 12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8	2018-02-01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0B 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21	2018-02-01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55-4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4길 6	2018-02-01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21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15(진장동)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시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2.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0B 12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8	2018-02-01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물류단지 5B 5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1로 15(진장동)	2018-02-01	진장유동로에서 부가된 도로로 진장유동로에 연계성을 반영	2016-07-28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0B 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21	2018-02-01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9B 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0길 26	2018-02-01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념으로 불사시도이던 두구나 석수면 이 책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55-4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4길 6	2018-02-01	예로부터 양정동은 양정, 양동, 처선마을로 거쳐 나뉘어 불리였지만 최근 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명불이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18-169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된 상태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따른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2018.2.1.~2018.2.18.(14일 이상)
3. 위반업소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일반음식점 (제2015-0254007호)	우령각시 호계점	울산 북구 호계10길 15, 지상1층 (호계동)	천*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6. 청문일시 및 장소: 2018. 2. 19.(14:00)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7.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41-7783)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8-172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7.12.26. 일부개정됨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 변경
- 나.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5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메일

다. 제출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우편번호 44248
- 전화 : (052)241-7521, 팩스 : (052)241-7509
- 전자메일(E-mail) : back7371@korea.kr

6. 기타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참조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1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재산세의 납기) ----- ----- ----- ----- 20만원 이하 ----- ----- ----- -----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p>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서명)</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12.26. 일부개정됨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세액공제 요건에 포함하는 조문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조문 변경
- 나. 지방세 고지서의 우편수령 방식을 대신하여,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6조)
 - 세액 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50원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2조)

3.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4. 개정조례안 : 불입**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메일

다. 제출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우편번호 44248
- 전화 : (052)241-7521, 팩스 : (052)241-7509
- 전자메일(E-mail) : back7371@korea.kr

6. 기타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참조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u>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u>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p> <p>2. <u>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u>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p> <p>② (생략)</p>	<p>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p> <p>1. <u>전자송달 방식에 따른</u>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u>자동이체 방식에 따른</u> -----</p> <p>2. <u>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u> -----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p>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서명)</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78호

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설치 행정예고

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설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3. 행정예고 내용 : 관내운동장 4개소 일원 CCTV 설치 장소

순 번	설 치 장 소	설 치 지 번	비 고
1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	
2	양정생활 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3	효문운동장	연암동 265-39번지	
4	달천운동장	달천동 75-1번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 31. ~ 2. 20. (20일간)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문화체육과
- 전 화 : 052) 241 - 7343
- F A X : 052) 241 - 733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